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

# 「2026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」
#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

2026. 10.

# 「2026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사업」
#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

## 1 과업개요

### 1. 과 업 명

가. 2026년 동북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

### 2. 과업목적

가.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수료생 중 미취업자 대상 외부전문가 매칭을 통한 취업 컨설팅으로 조기 취업 및 취업 활성화 도모

### 3.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

가.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

나. 취업컨설팅 대상자 선발 및 대상자별 취업 수요 분석

다. AI·SW 분야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자 매칭

라. 참여자별 취업컨설팅 3회 운영 및 상담 결과 관리

마. 모의 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

바. 채용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

사. 만족도 조사 성과관리 최종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

### 4. 과업기간

가. 계약체결일 ~ 30일

### 5. 추정금액

가. 금38,820,000원(금삼천팔백팔십이만원, VAT포함)

# 2 과업내용

## 1. 과업대상 및 목표

가. 과업대상: 2025년~2026년 동북권(경북, 강원, 대구)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수료생 중 미취업자 10명

※ 교육 수료생 성과추적조사 시 "취업컨설팅 수요조사 응답"에 응한 교육 수료생 중 10명 선발(경북(3), 강원(3), 대구(4))

나. 과업목표

| 구 분 | 세 부 내 용 |
|---|---|
| 대상 | ·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수료생 중 미취업자 |
| 지원 | · AI·SW 분야 외부전문가 매칭을 통한 취업 컨설팅 |
| | · 컨설팅 회수 : 3회/1인, 모의면접 1회 / 채용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|
| 지원목표 | · 10명 |

## 2. 과업내용

가. 운영계획 수립 및 참여자 관리

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일정 인력배치 전문가 구성 컨설팅 내용 및 참여자 관리방안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취업컨설팅 희망자 중 면담을 통한 최종 취업컨설팅 인원 선발(경북(3), 강원(3), 대구(4))을 수행하고, 선발된 참여자의 상담 일정 안내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.

③ 참여자의 희망직무 취업 준비 수준 보유역량 및 구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인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.

④ 불참 또는 중도포기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일정 조정 및 대체 참여자 선정 여부를 협의한다.

나. 외부전문가 구성 및 매칭

① AI・SW 분야 직무 이해도와 취업지도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. 관련 자격 보유 여부 및 채용 인사 취업상담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 등을 확인한다.

② 전문가 명단 담당분야 주요경력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

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정한다.

③ 참여자의 희망직무와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가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.

다. 개인별 취업컨설팅 운영

① 참여자 10명에게 1인당 3회 총 30회의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. 아래 회차별 내용을 기본으로 참여자의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
단, 1회차는 집체 컨설팅으로 진행 할 수 있다.

| 회차 | 주요내용 | 개인별 결과물 |
|---|---|---|
| 1회차 | 취업 준비 수준 진단 희망직무 분석 강점 및 보완사항 도출 구직목표 설정 | 취업진단 및 실행계획 |
| 2회차 | 희망직무에 맞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검토 교육 및 프로젝트 경험 정리 필요 시 포트폴리오 보완 | 입사지원서 검토 의견 및 보완자료 |
| 3회차 | 모의면접 및 피드백 지원기업 및 채용공고 검토 후속 구직활동 계획 수립 | 면접 피드백 및 구직활동 계획 |

② 컨설팅 일정 장소 및 회당 상담시간은 착수 시 확정하며 비대면 운영 시 참여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한다.

③ 회차별 상담일시 진행방식 전문가 참여자 주요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을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한다.

라. 모의 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

① 참여자의 희망직무 및 지원기업 특성을 반영한 모의 면접 운영계획 수립 및 면접 전문가 구성

② 직무역량・인성・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중심으로 실전형 모의 면접 실시 및 답변 구성・전달력 지도

③ 면접 태도, 의사소통 능력 및 직무 이해도 등에 대한 개인별 평가와 개선사항 피드백 제공

④ 개인별 면접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작성・제출,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속 면접 준비 지원

마. 구직활동 지원 및 성과관리

① 참여자별 희망직무에 적합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입사지원 준비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. 기업에 참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확인한다.

② 계약기간 내 상담 완료 여부 입사지원 면접 참여 및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한다. 취업 실적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바탕으로 보고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구분하여 기재한다.

③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와 개선의견 수렴을 실시한다.

④ 취업 여부와 컨설팅 수행 완료 여부를 구분하여 보고하며 취업인원은 별도의 의무 달성 수치로 설정하지 않는다.

## 3. 과업추진일정

| 구 분 | 월별 추진 일정 | |
|---|---|---|
| | M | M+1 |
| 과업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| | |
| 취업 수요 분석,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자 매칭 | | |
| 취업컨설팅 운영 및 상담 | | |
| 구직활동 지원 및 모의 면접 지원 | | |
| 만족도 조사 | | |
|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| | |

※ 상호 협의하에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4. 산출물 및 보고사항

○ 산출물 및 보고사항

| 구 분 | |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정기 보고 | 착수보고 | ·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(발주처 협의 후 결정)<br>· 과업추진계획 자료제출 | 전자파일 |
| | 중간보고 | · 발주처 협의 후 결정<br>·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| 추진 결과 증빙 및 보고자료 |
| | 최종보고 | · 계약 종료일 5일 전<br>· 용역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| 결과보고서 10부<br>/ (USB) 성과증빙 및 raw data 산출물 |
| 수시 보고 | 주요 이슈사항 | · 즉시협의 |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보고 |
| | 기타사항 | · 사안에 따라 협의(수시) | |
| 정산 | 정산보고 | · 계약 종료후 5일 이내 | 대금지급 |

○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지침

- 개조식 작성 및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

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, 한문 등을 표기함

- 조사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분석 그래프, 인포그래픽, 이미지,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
# 3 과업수행 조건

## 1. 과업수행 일반조건

○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.

○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,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.

○ 발주처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면 과업대상 및 범위, 추진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○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·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한다.

## 2. 과업의 수행조건

○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,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.

<표> 과업수행 인원별 수행역할

| 인력구분 | 수행인원 | 수행역할 |
|---|---|---|
| 책임연구원 | 1명 | · 사업총괄책임역할 수행<br>· 사업 전사관리 및 착수/중간/최종보고 수행 |
| 연구원 | 1명 | · 연구보조원 업무 진행상황 관리 및 조사결과 및 지표 확인<br>· 취업 컨설팅 전문가 섭외 / 자료 분석 및 보완 전문가 섭외 |
| 연구보조원 | 2명 | · 보조원 A(1명): 교육수료생 & 전문가 매칭 및 일정 조율, 컨설팅 결과 보고서 취합 및 작성<br>· 보조원 B(1명): 교육수료생 구직활동 지원(희망직무 채용공고 제공, 입사지원 및 면접 일정 지원) |

- ㅇ **책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보원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사업장 소속**이어야 한다.
-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.

## 3. 과업기간의 조정

- ㅇ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ㅇ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## 4. 과업내용의 조정

-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ㅇ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 통해 처리한다.
- ㅇ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 5. 용역비용의 조정

- ㅇ 상기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과업 종료 시 실비 정산토록 하고, 추가 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ㅇ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 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한다.
- ㅇ 과업 내용 內 응답 목표 및 성과증빙 회수 정량목표치 미달 시, 미달치에 해당하는 과업 수행비용은 회수될 수 있다.

## 6. 과업의 보고

- ㅇ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

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
ㅇ 산출물 자료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증빙, raw data, 보고서 파일은 최종본 기준으로 각 1부씩 USB 1식에 저장하여 발주처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7.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

ㅇ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,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.

ㅇ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,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.

## 8. 보안책임 및 지식재산권

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·대여할 수 없으며,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, 발주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
ㅇ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## 9. 손해배상

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.

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## 10.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신의,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,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.

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
-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